

학교부지 오염토양 정화비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

소송종류	민사소송	법원명	인천지방법원
사건번호	2020가합○○○○○ [1심]	사건유형	손해배상
원고	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(주)	피고	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외1
판결선고일	[1심]2021.12.10. 원고일부승 (교육감승)	비고	
사건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원고는 ○○○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복합개발사업 시행자로, 2018.12. 이 사건 복합개발사업 착공 후 부지 내 토사를 반출하면서 이 사건 부지가 불소로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, 피고 ○○○구의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명령 처분에 의거 토양정화공사를 진행함. ○ 원고는 부지거래 제공사 또는 전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오염된 사건 부지를 거래에 제공한 자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함. 		
주문	<p><인천광역시에 대한 주문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 2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인천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 		
판결이유	<p><인천광역시에 대한 판결 이유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업부지에는 불소와 관련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유치되었던 적이 없고, 불소가 함유된 오염물질의 누출사고 이력이 없으며, 외부의 매립토나 성토재가 혼입된 바 없는 반면, 불소는 암석 내 무기염의 풍화나 용해를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, 이 사건 사업부지의 주요 암석층은 불소와 상관성이 높은 흑운모 편마암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불소 오염은 자연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이며, 달리 피고 인천광역시가 이 사건 학교부지에 오염물질을 누출·유출하거나 투기·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. <p>이 사건 사업부지의 불소 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하는 ‘토양오염’에 해당하지 않고, 피고 인천광역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4호가 정한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원고는 피고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.</p> <p>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‘토양오염’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을 전제로 함. 그러나 이 사건 사업부지의 불소 오염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위 법에서 정하는 토양오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인천광역시는 위 법에서 정하는 정화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음. <p>따라서 피고 인천광역시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음.</p>		